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683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입학처), 02-970-6832

제정 2012. 4. 3.

개정 2012. 8. 23.

개정 2016. 9. 1.

개정 2021. 10. 18.

개정 2022. 4.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대학입학 전형제도 및 방법의 개선
- 2.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개발
- 3. 대학입학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 심의(전형계획, 전형자료, 자격기준, 사정 방법, 모집형태, 전형일정, 모집인원의 배분 등)
- 4. 그 밖의 신 · 편입생 모집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

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 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 4. 28.)

② 위원회의 내부위원은 입학처장, 단과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정보전산원장이 되며, 그 밖에 총장이 전임교원 중에서 임명하는 위 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된다.(개정 2016.9.1.)(개정 2022. 4. 28.)

③ 위원회의 외부위원은 대학입학 전형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 등이 있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신설 2022, 4, 28.)

제4조(위원의 임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 의결사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요사항은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에 학부(과)장을 배석하게 할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입학처 직원 중에서 입학처장이 지명한다.(개정 2016.9.1.)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제10조(입학사정관위원회) 입학사정관 전형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위원회를 두며, 입학사정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 로 정한다.

부칙(제120호, 2012. 4.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4호, 2012, 8,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37호, 2016. 9. 1.)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42호, 2021. 10.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83호, 2022. 4.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